

의안번호	2206161
의 회 인	박상웅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8.
추계번호	24A5646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(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(이하 '기술안보원')을 설립함(제1항) 기술안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4항) 1.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. 종합계획의 수립의 지원 3.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 제정 및 수정 지원에 관한 사항 4.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심의에 관한 지원 5.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등 심의에 관한 지원 6.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·합병등 등 심의에 관한 지원 7.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안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(국가기술안보원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립하도록 함(안제7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술안보원을 설립할 경우 현재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사업(3171-316)을 수행하고 있으며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기술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
 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조직현황은 [참고자료 1]에 제시.

[표 1] '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사업(3171-316)'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내역사업명)	2023 결산	2024 예산	2025 예산안
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	3,003	3,587	4,283
-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	2,927	3,357	4,053
- 무역안보기반조성	76	230	23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한편,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20694호, 2025.1.21. 공포, 7.22. 시행 예정) 제7조제6항¹⁾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예정임
 - 기술안보센터 운영비용은 '25년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운영예산으로 자체 조달, '26년 이후는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사업에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임
- 기술안보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개정안의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제7조(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)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- 다만,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안보원의 설립 추진 및 구체적 기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, 국가기술안보원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는 조직의 규모, 업무 범위 등에 따라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

[참고자료1] 산업기술보호협회 조직 현황

- 「산업기술보호법」 제16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
 - 조직은 2센터 1원 1소 10팀, 총 30명으로 구성
 - 비상근 임원 2명, 상근 임원 1명 포함

